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42,402,805	22,272,084
일반회계	650,654,236	19,519,627
특별회계	91,748,569	2,752,457
공기업특별회계	76,375,454	2,291,2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675,416	770,26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539,035	1,246,17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161,003	274,830
기타특별회계	15,373,115	461,193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0,000	300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721,256	21,638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81,930	44,458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60,584	88,818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07,210	96,216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737,599	82,128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438,136	13,144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3,816,400	114,492

제 2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사"와 같다.

제 5 조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888,4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6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